
 국토교통부		<h1>보도자료</h1>		
		배포일시	2020. 1. 21.(화) / 총4매(본문 2)	
담당 부서	건설산업과 건설정책과	담당 자	· 과장 주종완, 사무관 이기림, ☎ (044) 201-4597 · 과장 박정수, 사무관 김학원, 주무관 김보민 ☎ (044) 201-3509, 3511	
보도 일시		2020년 1월 22일(수) 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※ 통신·방송·인터넷은 1. 22(수) 06:00 이후 보도 가능		

국토부·산하기관 건설현장 2,871곳, 설 체불액 0원

- 임금 직접지급제 효과 커... '18 추석 이후 체불 0 달성 -

- 민족 최대 명절인 설을 앞두고 국토교통부 소속기관(7개)과 산하기관(6개) 건설현장에 대한 체불상황 전수점검 결과, 하도급 대금, 기계 대금, 임금 등 체불액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.
 - 국토부는 지난해 12.19부터 '20.1.17까지 국토관리청, LH·도공 등 소속 및 산하기관의 2,871개 건설현장에 대해 실시한 결과,
 - '17년 추석의 경우 109억 원 규모로 발생했던 체불액이 대폭 줄어들어, 지난 해 추석 이후 1건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.
- * ('19) 설·추석 0원, ('18) 추석 0원, ('18) 설 92억 원, ('17) 추석 109억 원, 설 93억 원, ('16) 추석 176억 원, 설 223억 원

< 체불 점검 개요 >

- ▶ 점검 기간: '19. 12. 19. ~ '20.1. 17
- ▶ 점검 대상: 국토부 소속 및 산하기관의 공공공사 현장 2,871개소
(지방국토관리청·지방항공청 / 한국토지주택공사, 한국도로공사, 한국철도공사, 철도시설공단, 한국공항공사, 인천공항공사)
- ▶ 점검 방식: 발주기관을 통해 하도급 대금 및 임금체불 발생 현황 확인

□ 그간 국토부는 매년 설과 추석에 앞서서 정례적으로 체불상황을 점검하고 명절 전 체불해소를 독려해 왔다.

○ 국토부 관계자는 “그간 건설산업은 대표적인 임금체불 취약분야로, 체불은 대다수가 비정규직·일용직 근로자인 건설근로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였다”면서,

- 건설사의 임금유용을 차단하는 공공발주자 임금 직접지급제*가 지난해 6월 19일 시행된 만큼, 현장에 확고히 안착시켜 명절뿐만 아니라 상시적으로 체불발생을 구조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.

* (임금 직접지급제) 발주자가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해 원도급사 계좌로 대금을 지급하면 본인 몫을 제외한 하도급대금, 자재·장비대금, 임금의 인출이 제한되고 송금만 허용

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
체불 관련은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김보민 주무관(☎ 044-201-3511)에게 연락주시기
바랍니다.

참고 1

기관별 실태점검 결과(1.17일 기준)

(단위 : 개, 억원)

구 분	하도급대금 체불					임금 체불
	현장수	계	공사	자재	기계	
합 계	2,871	0	0	0	0	0
국토청(5개)	625	0	0	0	0	0
항공청(2개)	0	0	0	0	0	0
한국도로공사	390	0	0	0	0	0
토지주택공사	1,020	0	0	0	0	0
한국철도공사	330	0	0	0	0	0
철도시설공단	373	0	0	0	0	0
한국공항공사	56	0	0	0	0	0
인천국제공항	77	0	0	0	0	0

참고 2

최근 체불액 발생 추이

(단위 : 억원)

구분		하도급대금 체불액	임금 체불액	총 체불액
'19	설·추석	0	0	0
'18	추석	0	0	0
	설	89.1	2.8	91.9
'17	추석	106.4	2.2	108.6
	설	86.5	6.5	93
'16	추석	167.8	7.9	175.7
	설	214.6	8.2	222.8
'15	추석	284.5	13.1	297.6
	설	467.6	9.2	476.8
'14	추석	238.4	14.9	253.3
	설	606.4	74.0	680.4

참고 3

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

□ 추진배경

- 임금체불은 건설근로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고질적 병폐이나 그간 지속적 제도개선과 단속강화에도 근절되지 않고 있는 실정
- 건설사의 임금유용 등을 원천 차단하는 근본적인 대책 필요

□ 제도 개요

- 임금체불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공공발주자가 임금·하도급대금 등을 「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*」을 통해 구분하여 청구·지급(19.6~)

* 건설사가 임금, 하도급 대금 등을 인출하지 못하고 근로자 계좌로 송금만 허용 (중기부, 조달청, 서울시 등에서 개발·보급 중)

- 의무화 전 국토부 소관 공사현장에 우선적으로 도입(18)한 결과, '18년 추석과 '19년 설·추석 임금체불이 근절된 효과 확인
- 노·사·정이 참여하는 TF를 통해 세부운영기준을 마련하여 발주 기관, 공사현장 등에 배포(19.6)하는 등 현장안착 추진
- 나아가, 편법·관행적 운영을 방지하고 보다 확실히 임금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및 시스템 개편 지속 추진

